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

세부사업명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					세목	민간사업 경상보조	
내역사업명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					예산 (천원)	691,200	
사업목적	○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, 도민건강, 환경 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(연 48만원 수준)							
근거법령	○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7조, 제55조 ○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 ○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9조, 제10조 ○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7조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'22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(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신부)							
지원한도	○ 임신부 1인당 연 48만원(자부담 9만 6천원)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	지방비	80	융자	-	자부담	20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(단위: 천원)							
	구 분	2020년		2021년		2022년		2023년
	합 계	1,798,750		882,180		480,960		864,000
	국 고	719,500		127,872		192,384		
	지 방비	719,500		577,872		192,384		691,200
	자부담	359,750		176,436		96,192		172,800
담당기관		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			친환경농업정책과 농정과 감귤농정과		양신영 김현주 조은갑		064-710-3162 064-728-3354 064-760-2722	
신청시기	6~7월 (사업량 미확보 시 연장)				사업시행기관		행정시	
관련자료	'22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							

1. 지원 자격 및 요건
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
 - ①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(이하 '통합몰')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신부로 확인된 자 또는 ②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74호)에 따른 임신·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
- 확보된 예산(사업량) 내에서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,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 우선 선정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(임산부)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, 도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등을 통해 도내 거소 분명 한자

2. 지원 품목 등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·무농약농산물,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,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
- 임신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,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이용 가능 (이용시 농산물 비율 50% 이상 준수)
-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·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, 부족 물량은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
 - *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(단, 한우·유정란·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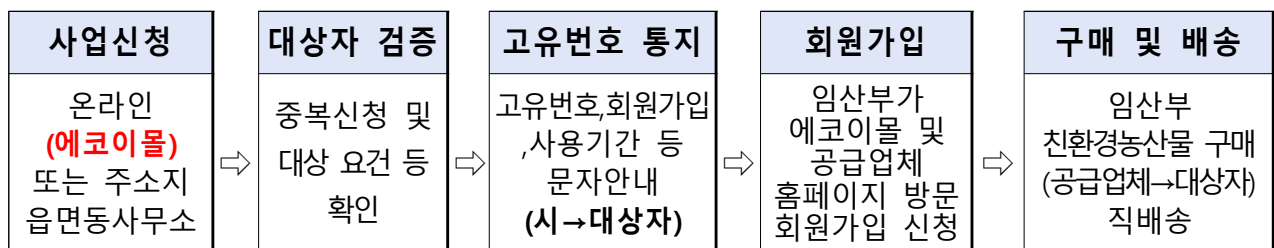
3. 지원방식

-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 임신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
 - (공급업체 선정)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
 - *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, 통합(쇼핑)몰 등록, 포장재 제작 등 준비
 - (지원신청) ① 임신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(www.ecoemall.com)에 온라인으로 신청, 또는 ② 임신·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시별로 공지

된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·신청

- (지원대상자 선정) 행정시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고유번호 부여
 - (주문 및 배송) 임산부는 부여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공급업체 홈페이지(쇼핑몰)에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,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가 요청한 장소까지 신속하게 배송
 - (지급 및 정산) 행정시에서는 사업 확정(고유번호 부여)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교부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행정시에 사후 정산
- * aT의 에코이몰은 회원가입 및 중복여부만 확인만 가능, 22년처럼 상품주문 불가

4. 선정방식



5. 지원조건

- 예산규모: 691,200천원 (도비, 제주시 499,200, 서귀포시 192,000)
 - 지원형태: 도비 80%, 수혜자 부담 20%
- 지원한도: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
 - * 친환경농산물 공급기간('23. 8. ~ 12월) 축소로 1회 주문 상한액 (100,000원) 폐지
 - ** 단,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% 이상으로 설정하되,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 가공 처리(박피·절단·단순 건조 등)한 경우(ex. 쌀가루, 건조채소 등)는 농산물 분류에 포함하여 산정
- 지원기간: 대상자 확정(고유번호부여) 후 '23.12.22일까지 농산물 주문
 - * 공급업체등 사정에 따라 주문기한은 변경 가능
 - 대상자 확정(고유번호부여)*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홈페이지 회원 미가입자와 3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
 - 행정시에서는 임산부의 온라인 회원 가입 여부와 미주문자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시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취소 여부 최종 결정
 - 행정시는 대상자 사업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기 신청한 임산부(대기자) 중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음

【 기본 원칙 】

- ◆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
- ◆ 친환경농산물을 접하는 소비자에게 ‘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’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

1. 지원 ‘명칭’ 및 지원한도

- (명칭) ‘꾸러미’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‘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’로 명명
- (지원한도) 1인당 연간 480,000원 이내 지원, 초과 금액은 자부담

2. 공급제품 관리

- (공급제품)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, 축산물(일부), 가공식품
- (품목구성)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* 적극 활용
 - *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·채소류 및 축산물, 가공식품 등을 공급업체·도·행정시 협의로 선정
- (생산지역) 국내산으로 하되,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(로컬푸드) 공급 권장

3. 공급제품의 품질관리

-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·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,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
-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·포장,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▶ 제주특별자치도 농관원과 협조하여 농장·공급업체등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,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(도·행정시·농관원·aT)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

4.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

-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등 가치소비 문화 확산 교육 병행 →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등과 연계 추진

1. 공급업체 선정

- (선정신청) 제주특별자치도(친환경농업정책과)에서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
 - 도는 사업신청서 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*의 제출을 공모 시 명기
 - * 예)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,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, 주문·판매시스템 및 온라인 유통 역량, 생산자조직(친환경집적지구 등)과의 연계,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, 품질관리매뉴얼 등 증빙 서류
- (선정심의) 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(50%) 및 현장평가(50%)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,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
 - 단,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,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
 - (서면평가) 공급업체의 작업장 인증 여부, 시설·장비 현황, 사업조직역량, 친환경농식품 안전관리, 품목다양화 역량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
 - (현장평가) 심의위원회는 실제 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, 발표 및 면담,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
- (공급계약) 행정시에서는 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에 그 결과를 제출

2. 시행준비

- (주문시스템) 공급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(쇼핑몰)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농산물 등록 및 주문 건에 대한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
- (공급업체 사전교육) 공급업체 대상 쇼핑몰 운영 및 주문관리, 민원처리 등에 대한 교육을 사업 시행 전 실시
- (포장재 등)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
 - 포장 겉면에 「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」를 표기(인쇄 또는 스티커 부착) 하여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(홍보·교육) 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,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

1. 지원신청 및 접수

○ (지원대상)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aT 에코이몰 또는 읍·면·동에 사업을 신청한 자

- * 임신부 자격 검증은 온라인 신청 시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확인 가능하며,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**출생증명서**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제2021-274호)에 따른 **임신·출산확인서** 또는 **산모수첩**을 제출하여야 함

- 도내 거주 외국인: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도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* 확인 후 지원 가능

* 주민등록등본(외국인 등재된 경우), 도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,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

-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·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
-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임신부

- *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

○ (지원신청) aT 에코이몰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, 보완적(오프라인)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행정시 읍·면·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

- 제주시,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지원하되,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 및 선발한 행정시에서 지원
- 행정시에서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중 모집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, 신청이 많을 경우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 우선 선정하며, 잔여량이나, 중도에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

○ (수혜대상 검증) aT 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시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과 연계된 임신·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및 읍면동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신청자 인적 사항 등을 대조·확인하여야 함

- 행정시(읍·면·동)은 적격성이 확인된 사업 신청자 명단을 행정시 보건소에 제공
- 행정시 보건소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 등의 수혜 여부를 행정시(읍·면·동)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 검증 추진

○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

- 임신부 관리시스템에서 행정시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신부 고유번호 부여 →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신부에게 고유번호 전송

- 임산부는 **고유번호 발급일***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업체 홈페이지(쇼핑몰) 회원으로 가입하고, 고유번호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 이상 농산물을 주문하여야 함 (조건 미충족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하고, 여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취소 여부 결정)
-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(다른 아이 임신 또는 출산 시는 신청 가능)
- (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) 사업 지원기한은 '23년 12월 22일까지이나, 지원 기한이 도래하기 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 종료 기준일로 함

2.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

【 지원한도 】

- 임산부 1인당 **친환경농산물 48만원**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 (고유번호 부여일)로부터 '23년 12월 22일까지 지원
 - 배송 횟수는 주1회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
 - * 1회 공급 30,000원이상 한도금액 없음, 주문시 농산물 가격 비율은 50% 이상
 -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은 물류비(배송),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

【 농산물 주문 및 결제 】

- (회원가입)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
 -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 가입 내용과, 행정사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
- (주문)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형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완성형 꾸러미 선택 가능
 - ① (선택형)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
 - ② (완성형)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,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
 - * 예) 임산부 과일 꾸러미, 임산부 채소 꾸러미 등
- (결제)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, 시스템 여건에 맞는 결제 수단 선택 사용

【 꾸러미 상품 제작 및 관리 】

- (제작기준)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·완성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
 - 가격대는 제한이 없으며, 완성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,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
 -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
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,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 가능
- (농산물 확보) 농산물 원물은 지역 내 친환경 집적지구,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우선 사용을 권장
- (가공)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,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·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(선별, 세척, 1차 가공 등) 실시
 -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,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
- (포장)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,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
 -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,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,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
- (안전관리)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납품 농가의 원물과 기존 납품농가의 신규납품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사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자체 검사를 통해 적합품임을 확인하여야 함

【 배송 】

-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신속하게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(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)
 -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

3. 제재 및 보고

-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,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, 공급 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**공급계약을 중단**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
 - * 공급업체는 농산물을 다룰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7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
 -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
 - 공급업체 고의 또는 과실로 「친환경농어업법」에 따른 친환경취급인증 취소 시 계약 해지
- ※ 본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등은 농식품부의 「2022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」 지침을 준용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]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(또는 읍·면·동)에서 시행하는 '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'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▶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목적	보유·이용기간
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e-mail, 임신확인일 및 출산(예정)일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,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	5년 (기간 종료 후 폐기)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'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'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▶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 항목	보유·이용기간
aT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	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e-mail, 기초생활보장형태, 임신확인일 또는 출산(예정)일	5년 (기간 종료 후 폐기)
지역 보건소			
지원사업 공급업체	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	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e-mail	

※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'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'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23년 월 일

본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시장 귀중

【○○ 읍·면·동장】